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칙

전문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국민과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공익을 추구하며 인권 실현에 부응하는 법률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2009년 3월 1일 개원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자치조직이다.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협동정신이 풍부한 지도적 인격체를 배양한다는 영남대학교의 창학정신을 바탕으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조인으로서의 자질 함양과 자립 실현을 그 근본이념으로 한다.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지닌 사명에 입각하여 국가와 민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항구적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세계화 시대의 주인으로서 지속적인 자기계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또한 다가올 통일한국 시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법률가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지성인으로서 미래 대한민국의 건설과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09년 3월 16일 학생회칙제정위원회 통일안으로 제정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칙을 학생총회를 거쳐 인준·공포한다.

2009년 3월 20일

개정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25대 학생회 '영글'은 다양화된 학생회 회원들의 복지 요청에 부응하기로 다짐한다. 이러한 요청에 발맞추어 변화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학생회칙을 전부 개정하기로 하고, 2024년 8월 26일 학생총회 통일안으로 제정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칙 전부개정안을 학생회 회원들의 총투표를 거쳐 인준·공포한다.

2024년 8월 26일

1.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학생생활의 자치를 실현하고 복지

향 상을 위해 노력하고 지도자적인 법조인으로서의 자질 함양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회는 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에 위치한다.

제4조(구성)

본회는 학생총회, 학생대표단, 집행부, 특별기구로 구성한다.

제5조(학교당국 및 교수진과의 관계)

- ① 본회는 학교당국과 교수진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지위에서 회원의 복리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②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학교당국의 행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학전문대학원 내 교육자원·편의시설의 이용·처분 및 기타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중요사항
 2. 회원의 자치활동의 보장을 위한 중요사항
 3. 학생활동·신분에 관련된 학칙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의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③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당국 및 교수진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본회의 대표자 및 그의 위임을 받은 자는 학교당국 및 교수진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학생총회 기타 본회의 회의에서는 회의의 의장과 학교당국이 필요하다고 공동으로 인정한 경우 학교당국 및 교수진에 대하여 그 회의에의 참석과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

- ① 본회의 회원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자로 한다.
- ② 휴학생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학생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③ 수료생은 재학생과 동일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단,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08.26.신설>

제7조(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휴학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본회의 활동과 관련된 제반 의사결정에서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회원은 신문 기타 학내 언론을 통하여 본회의 자치활동에 필요한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 ④ 회원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8조(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회칙 및 본회 제반 회의에서 민주적으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한다.
 - ② 회원은 학생회비를 납부한다. 단, 휴학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원은 본회를 수호하며 자치활동에 성실히 참여한다.
 - ④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하면 학생회 회원으로서 권리는 보장되지 아니한다. 단,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4.08.26. 신설>

제3장 학생총회

제9조(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0조(구성)

- ① 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 ② 각 학년 학생총회는 학년 회원으로 구성하며 총회규정을 준용한다.
- ③ 학생총회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진행으로 갈음할 수 있다. <2024.08.26. 신설>

제11조(의장)

- ①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 ② 학생회장은 학생총회의 의장이 된다. 학생회장이 의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학생회장, 3학년 대표, 2학년 대표, 1학년 대표의 순서로 임시의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③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각 학년 대표 전원(이하 학생대표단이라 한다)이 궐위나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지명한 학생 1인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2024.08.26. 개정>

제12조(소집)

- ① 학생총회는 학생대표단이 소집한다. <2024.08.26. 개정>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학생회장 또는 재적회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제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며 학생총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는 사항
- ③ 의장은 개회일 7일 전에 소집의 이유를 명시하여 공고한다. 다만 전항의 1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발안)

본회의 회원은 20인 이상의 동의 또는 연서로 학생총회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제14조(업무 및 권한)

학생총회는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각 학년대표에 대한 탄핵안과 제12조, 제13조에 의해 발의된 안건을 토의하고 심의하며 결정한다.

제15조(개회 및 의결)

- ① 학생총회는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의결은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 ③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결을 포함한 모든 진행과정에서의 익명성을 보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4.08.26. 신설>

제16조(총투표)

- ① 총투표는 학생총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는 의사결정방식이다.
- ② 본회 회원 30인 이상의 제안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총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 ③ 탄핵안 및 학생소환의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024.08.26. 개정>

제4장 학생대표단

제17조(학생대표단)

학생대표단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각 학년대표로 구성된다.

제18조(학생회장)

- ① 학생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학생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부학생회장도 마찬가지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3학년대표, 2학년대표, 1학년대표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③ 학생회장은 본회의 각종 대외활동을 관장한다. 단, 경우에 따라 그 직무를 부학생회장이나 각 학년 대표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④ 학생회장은 집행부 내의 각 집행국의 장을 임면한다.
- ⑤ 학생회장은 기타 학생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생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19조(부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학생회장의 궐위나 사고시 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여학우대표)

- ① 삭제 <2024.08.26.>
- ② 삭제 <2024.08.26.>
- ③ 삭제 <2024.08.26.>
- ④ 삭제 <2024.08.26.>

제21조(학생대표단의 임기)

- ①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각 학년 대표의 임기는 6개월로 하며 당선된 직후 부터 직무를 수행한다.
- ②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024.08.26. 개정>

제22조(선거)

- ①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각 학년 대표의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자는 본회 의 회원인 자로 한다. 단 휴학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선거는 보통·평등·비밀·직접선거로 한다.
- ③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후보자가 하나의 후보단을 이루어 입후보하며 재적 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직전투표의 1, 2위자끼리 재투표를 실시한다.

- ④ 입후보한 후보단이 1개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재적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당선될 수 없다.
- ⑤ 제1항 내지 제5항은 각 학년 대표의 선거에 준용한다. 단, 제3항의 후보단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각 학년 대표 선거는 매학기 초로 실시한다.

제22조의 2(선거) <2024.08.26. 신설>

- ① 임기의 만료로 퇴임한 학생대표단, 학년대표는 새로 당선된 학생대표단, 학년대표가 취임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23조(신분보장)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각 학년 대표는 탄핵 및 학생소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유로도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24조(탄핵)

- ①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각 학년대표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학칙 또는 본 회의 의결사항을 위배함으로써 본회의 자치활동을 저해한 때에는 학생총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탄핵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의결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제25조(학생소환)

- ①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각 학년 대표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학칙 또는 본회의 의결사항을 위배함으로써 본회의 자치활동을 저해하거나 그 직을 수행할 자질이 부족한 때, 기타 학생대표단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적회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학생소환투표를 발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학생소환투표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학생소환투표의 가결로 인한 효과는 전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5장 집행부

제26조(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27조(구성)

- ① 집행부는 개별 집행국으로 구성한다. 집행부원은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 ② 집행부의 체계는 학생회장이 구성한다.

제28조(업무 및 권한)

집행부는 학생회 관련 업무전반에 관하여 학생회장을 보좌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제29조(총사퇴)

제24조(탄핵) 및 제25조(학생소환)에 의하여 학생대표단 전원이 해임된 때에는 집행부원은 당연히 사퇴한다.

제6장 선거관리

제30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31조(구성)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장이 임명하고 그 수는 재량으로 정한다.
<2024.08.26. 개정>
- ② 학생대표단 구성원이 원칙적으로 선거관리위원이 된다. <2024.08.26. 개정>
- ③ 삭제 <2024.08.26.>
-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현재 임기 중의 학생회장으로 한다.
<2024.08.26. 신설>

제32조(업무 및 권한)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 1. 선거의 공고 및 전반적인 준비
 - 2. 선거준비과정에서의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정
 - 3. 후보단의 선거활동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조정
 - 4. 부정선거활동의 단속 및 조치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의 구성과 역할 및 업무, 선거운동, 투표 및 개표, 당선공고, 징계 등의 선거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선거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제33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학생회비, 학교보조금 기타 지원금액으로 한다.

제34조(학생회비)

- ① 본회는 학생대표단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집행하고 회비를 징수하는 업무를 학생대표단에 위임한다.
- ② 학생회비는 학교 측과 협의하여 학생회장이 정한다. 다만 학생회비를 증액할 경우에는 학생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5조(예산)

예산은 매학기 학생대표단에서 편성하고 집행한다.

제36조(결산보고)

학생대표단은 회계년도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원 20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직전 학기 재정내역을 공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2024.08.26. 개정>

제8장 학생회칙 개정

제37조(발의)

- ① 학생회칙 개정의 발의 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원 3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학생대표단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발의
- ② 발의된 학생회칙 개정안은 학생회장이 즉시 공고한다.

제38조(의결)

- ① 발의된 학생회칙 개정안은 학생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② 학생회칙 개정에 관한 의결은 총회에서 기명·거수의 방식으로 한다.
- ③ 제2항의 의결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진행으로 갈음할 수 있다. <2024.08.26. 신설>

제39조(공포)

- ① 개정된 학생회칙은 학생회장이 즉시 공포한다.
- ② 개정된 학생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9장 운영위원회

제40조(구성)

삭제 <2024.08.26.>

제41조(역할)

삭제 <2024.08.26.>

제10장 학내자치단체

제42조(학술단체)

학술단체는 학생학술단체운영지침을 따른다.

제43조(동아리)

동아리는 동아리운영지침을 따른다.

제44조(도서관)

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자치위원회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45조(생활관)

생활관에 관한 사항은 생활관차지위원회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46조(상조회)

상조회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장의 운영지침을 따른다. <2024.08.26. 개정>

제11장 특별기구

제47조(성립요건)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성립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될 때 학생회칙에 의거한 절차를 거쳐 그 산하에 특별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에 알맞은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본회 회원 중 특정 위치 또는 영역에서 자치활동을 꾸준히 수행하여 그 이 해와 요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을 때
 1. 본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 조직이 있을 때
 1. 본회의 관련 분야 집행국이 없거나 이미 존재하는 집행국의 활동만으로는 자치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때

제48조(절차)

- ① 특별기구의 승인을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운영계획서 및 활동보고서
 3. 지출내역서
- ② 학생대표단에서는 제1항의 규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특별기구의 인정에 관한 안건을 학생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49조(운영)

- ① 특별기구는 학생회와는 독자적으로 집행가능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 ② 특별기구의 운영은 각 기구의 정관에 의함이 원칙이다.

부칙

제1조(효력)

본 학생회칙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본 학생회칙 제정 전에 이루어진 학생회의 구성 및 행위는 본 회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지속한다.

제2조(보충규정)

본 학생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대표단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른다. <2024.08.26. 개정>